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166
----------	--------

제안년월일 : 2024. 11. 19.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직개편('25. 1. 1.)이 예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에 소관 행정기구 명칭 변경 및 신설 사항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반영(안 제3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4. 11. 19. ~ 11. 24. (제출된 의견 없음)

라.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교육체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도시환경국”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환경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p> <p>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행정건설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다. (생략)</p> <p><u><신 설></u></p> <p style="padding-left: 20px;">라. ~ 아. (생략)</p> <p>3. 복지도시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삭 제> <u><신 설></u></p> <p style="padding-left: 20px;"><u>도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u><신 설></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 라. (생략)</p> <p>③ (생략)</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다.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u>라. 교육체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마. ~ 자. (현행 라목부터 아목까지와 같음)</p> <p>3.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환경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u>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라. · 마. (현행 다목 및 라목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의회사무국 의사팀 박철호
연 락 처	02-3153-6175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 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다만,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 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29.>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 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 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2. 20., 2024. 3. 29.>